

「檢要」에 대한 문헌학적 고찰

A Literature Study of *Geomyo*

이 연 희(Lee, Yeon-Hee)*

안 상 우(Ahn, Sang-Woo)**

◁ 목 차 ▷

- | | |
|----------------|------------------------|
| 1. 서 론 | 6. 「檢要」에 나타난 법의학용어 |
| 2. 「檢要」의 저술 시기 | 7. 「檢要」에 나타난 其他 特記 사항들 |
| 3. 「檢要」의 저술 배경 | 8. 결 론 |
| 4. 구성과 내용 | <참고문헌> |
| 5. 자료의 특징 | |

< 초 록 >

「檢要」는 1820년에서 1865년을 전후한 시기에 저술된 법의학서로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집필당시 중앙집권체제 강화로 인한 지방 수령의 업무 증가, 사회적 변동 심화로 각종 사건이 증가했던 까닭으로, 수령들은 복잡한 법률 체계 속에서 사건 처리를 위해 실용적인 참고 서적을 필요로 하였다. 특히 살인사건에 대한 검험문안 작성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분류되어 있어, 관련 서적도 여러 종류가 편찬되었고, 특히 「檢要」는 세종시대 이후 편찬된 여러 전통 법의학서의 계통을 잇고 있다.

「檢要」는 검험의 주요 사항들과 檢驗文案에서 발췌된 각 편들로 구성되며, 상하권으로 나뉘어져 있다. 앞부분은 「증수무원록」에서 발췌한 것이며, 뒷부분은 검험문안의 結辭와 題詞에서 발췌한 것이 대부분이다. 단, <各招>만은 검험문안 전체를 다 실어 놓은 것으로 생각되며, 끝부분에 「흠휼신서」의 인용이나, 어휘 풀이 등의 내용이 조금 실려 있다.

「檢要」는 檢驗의 기본 사항들을 정리한 후 實因別로 跋辭, 題詞를 발췌하고, 마지막으로 檢案 작성 시의 주요 사항들(正犯, 干犯, 嫌格 등등)에 대한 사례를 정리한, '실무 사례집'으로서의 完整的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檢要」에는 사망의 원인을 주검의 상태와 관련지어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법의학과 관련된 연구 성과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우리는 검안관련 전문가 집단이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활동했으며,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시켜 왔음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당시 법의학 용어를 명확히 고증할 수 있는 단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가치 있는 법의학적 기술들을 발견할 수 있어 향후 관련 분야 연구에 빼놓을 수 없는 참고자료라 할 수 있다.

要語: 檢要, 검험, 증수무원록, 중수무원록, 흠휼신서, 正犯, 干犯, 嫌格

* 경희대학교 한의대 의사학교실(erdf22@hanmail.net)

** 한국한의학연구원(answer@kiom.re.kr)

접수일: 2009년 6월 4일 최초심사일: 2009년 6월 5일 심사완료일: 2009년 6월 12일

<ABSTRACT>

'*Geomyo*' (The Gist of autopsy, hereinafter, *Geomyo*) is a book on forensic medicine written during the period ranging from 1820 to 1865 and its real author is unknown.

It is assumed that when this book was written, the occurrence of various accidents rose due to the increase in local governors' work load and deepening of social fluctuations incurred by the intensification of centralized policies; thus, local governors needed practical reference books in order to deal with incidents in the midst of a complicated legal system. Particularly, issuing a death certificate for a murder case was classified to be so important that several books on this topic were compiled, and *Keomyo* inherited several traditional books on forensic medicine compiled since the reign of King Sejong.

Geomyo is composed of chapters on the major topics of autopsy, that is, 'Geomhom', and excerpts from the reports of autopsies, that is, 'Geoman', and divided into two volumes. The first part of *Geomyo* contains mostly the excerpts from *Jungsu Muwonrok*(a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of the ancient Chinese forensic book published during the Joseon period) and the later part includes some excerpts from the concluding and introductory remarks of 'Geoman's. Only 'Gakcho' is assumed to include the whole draft of 'Geoman', and at the end of the book, few citations from *Heumheumshinseo* (The instructions on a person's punishment and imprisonment] and the explanations of technical jargons are included.

Geomyo as a casebook for conducting 'Geomhom' is very systematically organized to cover the basic procedures of 'Geomhom', the excerpts from the introductory and explanatory remarks, arranged according to the causes of deaths, and finally the major elements (such as the principal offender, an accomplice, and infamous criminal, etc.) to be considered in writing 'Geoman'. Since *Geomyo* recorded in detail the causes of deaths linked with the state of corpses, it shows the accomplishments and experiences of research in forensic medicine were well accumulated.

With these data, we can also assume that there had been a group of experts in autopsy for a long time, and they had accumulated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s in forensic medicine. Further, since *Geomyo* contained a lot of clues which could clearly evidence the terms of forensic medicine at that time, and documented valuable forensic techniques in this area, it can be valued as a indispensable reference source in this field.

Key words: *Geomyo*, *Geomhom*, *Jungsu Muwonrok*, *Heumheumshinseo*,
Principal Offender, Accomplice, Infamous Criminal

1. 서론

최근 몇 년 사이에 전통 법의학¹⁾은 문화 콘텐츠의 하나로서 드라마나 영화, 소설 등에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05년 중국 전통 법의학의 鼻祖로 일컬어지는 宋慈를 주인공으로 《大宋提刑官》이라는 장편 드라마가 제작되어 인기를 모았으며, 수년전 《판관 포청천》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包拯에 대한 사적이 재조명되고 근간에는 《신판관 포청천》이 방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별순검》, 《茶母》, 《혈의 누》 등의 드라마와 영화가 제작되어 전통 법의학은 史劇의 새로운 콘텐츠원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중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전통 법의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법의학자들과 의사학자들의 通史類 연구를 비롯한 특색 있는 연구들이 누적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일찍이 이영택의 논고²⁾ 이후로 法史學·史學 연구자들의 연구 외에 정작 의학 분야에서는 연구가 많지 않았으며, 의학적인 검토가 아닌 경우에는 연구의 초점도 주로 형사 제도나 사회사·생활사 관련 부분에 집중되어, 법의학 자체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조선시대에 나온 법의학 전문서적으로는 「新註無冤錄」과 「增修無冤錄」, 「增修無冤錄諺解」 등이 있고 법의학과 관련된 서적으로 審理錄, 「欽欽新書」, 「秋官志」, 「法規類編」, 「司法稟報」 등이 있다.³⁾ 「檢要」는 조선 후기에 나온 살인 사건 수사 실무 참고서로, 「增修無冤錄」과 「增修無冤錄諺解」 등 조선조 법의학의 핵심을 이루었던 두 법의학 전문 서적의 발간 이후, 당시의 법의학과 그 응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연구 대상이다.

-
- 1) 중국에서는 보통 '古代 法醫學'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古代'라는 용어는 역사 시대 구분에서, 원시 시대와 중세 사이의 시대를 지칭하며,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때부터 통일 신라 시대까지, 중국은 하나라 때부터 당나라 때까지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필자는 '전통 법의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 2) 이영택, "近世朝鮮의 法醫學的裁判과 無冤錄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研究委員會 논문집」 권4(1956. 10), 177-279.
 - 3) 안상우, "檢要-반드시 살펴야 할 檢案의 요점," 「고의서산책183, 민족의학신문 제443호 (2003. 12).

본고에서는 2008년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진행된 이 책의 번역에 참여하여 얻은 결과⁴⁾를 토대로 檢要 에 대한 편찬시기와 배경 및 기본적인 문헌의 구성과 주요 특징을 파악하여 문헌 고찰을 시행함과 더불어 전통법의학 용어 및 법의학 적 記述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2. 「檢要」의 저술 시기

이 책은 현재 奎章閣에 유일하게 1부만 남아 있는⁵⁾ 필사본인데다 刊記, 序文, 跋文 등이 없는 관계로 자세한 발간의 경위, 간행 시기를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檢要」의 내용 중에 몇 가지 저술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

첫째, 國典⁶⁾으로 「大典通編」이 주로 인용되고 있고, 「大典會通」의 인용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大典通編」은 「大典會通」이 반포되는 1865년까지 조선의 주요 법전으로 사용되었다.

둘째, 1819년 저술된 「欽欽新書」가 자주 인용되고 있다.

셋째, 내용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관련자의 이름과 시기를 알 수 없지만, 평안남도 价川郡 吉召史의 사건은 범인과 관련자들의 실명을 모두 기재해 두었다. 조사해본 결과,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이 순조 22년부터 32년까지의 「日省錄」에 수차례 기록되어 있으며, 사건 발생 일자도 순조 20년(1820년) 8월 18일로 기록되어 있다.⁷⁾

따라서 위의 사실을 감안할 때, 이 책의 편찬 시기는 아무리 빠르게 잡아도

4) 안상우, 이연희, 전혜경, 「國譯 檢要」(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5) 규장각에 同名의 서적이 하나 더 있는데(古5125-18), 살인사건을 비롯한 범죄 수사와 처벌에 필요한 受教와 법조문 등을 모아놓은 책으로 여기에서 논하는 책과는 다른 책이다.
6) 조선시대의 법전은 크게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중국에서 들어온 「大明律」이며, 또 하나는 國典이다. 「大明律」은 고려 말에 들어온 이래로 계속적인 국내화 작업을 거쳐 사용되었고, 國典은 그와 별도로 국내 실정에 알맞은 법전을 만든 것이다. 조선조에는 이 두 부류가 함께 사용되었다.
7) 「일성록」 순조 23년(1823년) 1월 20일.

1820년 이후이다. 아울러 大典會通 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고려한다면, 「大典會通」의 반포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편찬 시기는 늦추어 잡더라도 1865년을 크게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책의 편찬 시기는 '1820년 - 1865년경' 정도라 하겠다. 단, 일본의 의사학자인 三木榮은 순조 연간(1801-1834)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그 근거를 알 수 없다.⁸⁾

3. 「檢要」의 저술 배경

3.1 시대적 상황

조선은 18세기 노론의 집권과 영·정조 시기의 왕권 강화를 거치면서 留鄉所, 鄉約 등을 통해 이루어지던 지방 士族들의 지방 지배를 약화시키고, 守令의 권한 강화를 통해 지방에 대한 중앙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수령은 지방에서 사법, 행정, 군사 관련 업무를 모두 맡고 있었는데, 수령의 주요 업무는 守令七事라 하여, 크게 農桑盛, 戶口增, 學校興, 軍政修, 賦役均, 詞訟簡, 奸猾息 등의 일곱 가지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원활한 부세 수취와 '사법권 행사'에 있었다.

조선조의 刑法은 단일법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大明律」을 기본으로 準用하고, 「經國大典」 이후 계속적으로 간행된 각종 國典들로 중국과 다른 조선의 현실을 반영하였으며, 지속적인 受教를 통해 때마다 좀 더 세밀한 보충이 이루어졌다. 文科 출신자의 경우 覆試 이전의 照訖講을 통해, 武科 출신자의 경우 覆試를 통해 「經國大典」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 있었으며, 取才⁹⁾를 통해 수령이

8) 三木榮이 价川郡 吉召史 사건이 순조 재위 중 일어난 것을 확인하여 이렇게 추정하였다는 가정도 불가한 것은 아니겠으나, 전산화된 자료로 편하게 검색할 수도 없었던 시절에 방대한 「日省錄」에서 단 한번 언급된 이 부분을 찾아내어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고 하겠다.

9) 정식[式年試]으로 또는 그 밖의 경우에 실시되는 과거(科擧)가 아니고, 소정의 특수한

되는 경우에는 「大明律」, 「經國大典」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으니, 결과적으로 수령들은 복잡한 법체계와 현장 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게 되었다. 게다가, 조선 후기 각종 사회문제의 증가는 재판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각종 법조문들을 정리한 法律指針書들이 다수 발간되어, 「詞訟類聚」, 「決訟類聚」의 전통을 이은 「決訟類聚補」와 「受教定例」, 「刑典事目」, 「三典類抄」 등 각종 법조문들을 정리한 책들이 편찬되었고, 19세기 전반기에는 좀 더 실용적인 「律例要覽」이 지방관들의 民刑事 관련 업무에 참고가 되었다. 이와 함께 조선 후기에는 治郡要訣, 「政要」, 「牧民心書」, 「居官大要」, 「牧民大方」, 「先覺」, 「臨官政要」 등의 각종 牧民書들이 출간되었다. 업무가 복잡했던 만큼 이러한 목민서들의 주제 또한 다양하였는데, 正祖代 이후에는 民訴, 殺獄의 처리와 수령의 刑杖 사용 등 사법권 행사 관련 내용들이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사건 사례집, 관례집의 성격의 띤 책들도 다양하게 편찬되어, 「審理錄」, 「欽欽新書」, 「錦題」, 「何自苦」, 「檢案審理跋辭」 등등 여러 서적이 현존하고 있다.

조선조의 刑書¹⁰⁾ 중에서도, 특수한 세부 분과라 할 수 있는 법의학 서적은 중국에서 수입된 「無冤錄」이 있었지만, 그대로 국내에서 사용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았다. 「무원록」은 본디 元나라 王興가 송나라의 형사사건 처리 기록들을 토대로 1308년에 편찬한 법의학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전기부터 법의학 관련 의학서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세종 20년(1338)에 崔致雲 등이 新註無冤錄에 音注를 더하고 다시 세종 22년(1440)에 간행하여 현장 檢屍 등에 사용하였다.¹¹⁾

그런데 이 책의 문제는 원서 자체가 워낙 난해하고 조선의 상황에 적합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었다. 이에 영조 대에 이르러 具宅奎에게 명하여 「신주무원

직임(職任)에 대한 재감자(才堪者: 적임자)나 음자제(蔭子弟)를 선용(選用)하기 위하여 약간의 해당 시험과목을 선별(選別)하여 실시하는 시험제도.

10) 「無冤錄」은 「秋官志」에서 刑書에 포함되어 있다.

11) 김남일 외, 「韓醫學通史」(대성의학사, 2006).

록」을 고치고 더하여 다시 편찬하도록 하였으나 당대에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훗날 그의 아들 具允明이 계속하여 내용을 보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다. 정조대에 이르러서는 형조판서 徐有麟이 律學別提 韓宗祐 등과 함께 한글로 번역하여 간행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增修無冤錄諺解」이다.¹²⁾

이러한 법률지침서, 목민서, 법의학 서적들은 대부분이 18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출현하였는데, 19세기의 ‘살인 사건 수사 실례 모음집’, ‘檢驗文案 작성의 참고서’라 할 수 있는 「檢要」의 편찬은 이러한 18세기 이후의 지방관용 목민서, 법률지침서의 출현과 법의학 서적 정비라는 맥락의 연장선 안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欽欽新書」는 「檢要」의 뒷부분에서 여러 차례 인용되어, 「檢要」의 편찬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檢驗 현장과 檢驗文案 작성 시의 필요성

조선조에는 살인 사건이 났을 경우, 漢城府에서는 當府(中, 東, 西, 南, 北의 五部)官들이 初檢을 맡게 되며, 外方에서는 사건 발생지의 해당 수령이 初檢을 맡게 되었다. 初檢은 최초의 검험을 뜻하는데, 이는 단순한 검시만이 아니라, 현장 확인, 흉기 확인, 증인 심문 등을 통한 ‘상세한 實因 규명’과 ‘한명의 正犯 결정’을 기본으로 하였다. 살인에 대한 최종 판결은 왕만이 내릴 수 있었지만, 初檢에서부터 상세한 結辭를 통해 초기 결론을 내려야 했던 것이다.

檢驗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두 번째 檢驗을 ‘覆檢’이라 하였다. 지방에서는 인근 지역의 수령이 覆檢을 맡았고, 漢城府에서는 刑曹의 관원이 이 일을 맡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初檢과 동일하였으나, 初檢官과 覆檢官이 서로 내통하여 내용을 짜 맞추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으며, 부실한 檢驗 또한 처벌을 받았다. 또한, 두 번의 檢驗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추가적인 檢驗이 실시되었다.

12) 안상우, “增修無冤錄-문예부흥과 법치문화,” 「고의서산책378, 민족의학신문」 제668호 (2008. 7.).

결국 守丞에게 檢驗과 檢驗文案의 작성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신중히 해야 할 일이었다. 이에 법의학 서적인 『無冤錄』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欽欽新書』와 같은 방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론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실용에 적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검험의 요점과 실제의 사례를 檢驗 현장과 檢驗文案 작성 시의 필요에 맞게 정리한 실용 서적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檢要』는 비록 널리 반포되지는 못하였지만, 그 내용으로 보건데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저술된 것으로 보인다.

4. 구성과 내용

4.1 「檢要」첫째 부분의 구성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검험문안 작성의 기본 사항 부분으로 編次, 仰合面 脈錄, 法文, 字訓으로 구성되어 있다.

4.1.1 編次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屍親, 仵作, 脈錄, 正犯, 干犯, 干連, 看證, 詞連, 切隣, 面任, 應檢人, 守直軍 시친(屍親)으로는 발고인(發告人)¹³⁾이나 아주 가까운 한두 사람만 취초(取招)¹⁴⁾한다. 면임(面任)이나 이임(里任)이 낸 고발장만 있고 당초 시친의 고발이 없었다면, 고발장을 낸 이임을 먼저 취초(取招)하여 시친 앞 순서에 둔다.¹⁵⁾

13) 發告人: 고발인.

14) 取招: 진술을 받음.

15) 「檢要」. “屍親, 只以發告人及至內者一二人取招. 若或只有面里任發狀, 而初無屍親進告, 則發狀之里任, 先爲取招, 置之屍親之右次.”

<표 1> 《各招》와 《林弄玉 三檢文案》의 編次 대조

檢案	編次
各招	(1) 檢官이 檢驗에 착수하게 된 경위, (2) 屍親의 初招, (3) 仵作, (4) 무원록에 따른 檢屍(말미에 實因을 단정함), (5) 屍親 이외 應問人의 初招(正犯, 看證, 詞連 A, 風憲, 尊位, 詞連 B, 切隣), (6) 更招(正犯), (7) 面質 ¹⁶⁾ (간증(看證)과 시친(屍親)), (8) 應檢各人, ¹⁷⁾ (9) 守直軍, (10) 검관의 跋辭 ¹⁸⁾
林弄玉 三檢文案 ¹⁹⁾	(1) 檢官이 檢驗에 착수하게 된 경위, (2) 시친의 初招(屍親 A, 시친 B), (3) 무원록에 따른 檢시(말미에 實因을 단정함), (4) 拷問(다짐), (5) 시친 이외의 應檢人 ²⁰⁾ 의 초초(정범, 간련 A, 간련 B, 간련 C, 간련 D, 간증 A, 간증 B, 간증 C, 간증 D, 사연 A, 사연 B, 겨린, 풍헌, 里正), (6) 更招(갱초의 순서는 시친 A, 정범, 간련 A, 간련 B, 간련 C, 간증 A, 간증 B, 간증 C, 간증 D, 정범), (7) 檢관의 跋辭, (8) 檢報에 대한 관찰사의 題詞, (9) 同推跋辭, (10) 同推題詞

이 編次를 檢要 의 《各招》편 안에 비교적 완전한 형태를 갖춘 상태로 실려 있는 金致西의 부인 살해 사건 檢案의 편차와 대조해 보면 대략 이 순서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일부 어긋나는 부분으로는 ‘風憲, 尊位, 詞連 B, 切隣’ 부분을 들 수 있는데, 風憲은 面任을 맡고 있어 切隣과 순서가 뒤바뀌어 있고, 詞連 B 또한 중간에 끼여져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切隣들이 사건에 관련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진술의 중요도가 매우 떨어지며, 詞連 B의 경우는 風憲과 尊位の 진술을 듣고 필요하여 문초하게 된 경우이다. 사건 조사 상황에 따라 약간의 융통성을 둔 編次라고 보기에 무리가 없다.

또한, 이 編次는 현재까지 드물게 남아있는 19세기 초 檢안의 하나인 1839년의 務安縣 一老面 竹考之里 致死男人 林弄玉 屍體 三檢文案의 편차와 상당히 일치도가 높다. 지금까지 1839년의 이 檢안은 문서의 체제상 법식에 맞지 않는

16) 面質: 대질 심문.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진술이 어긋나는 관계로 특별히 面質이 행해졌다.
 17) 「檢要」 원문에는 ‘應問各人’으로 되어 있다. 응문각인은 사건에 관한 진실을 알고 있다고 예상되어 응당 신문할 해야 할 사람들을 말하는데, 원문의 내용상으로는 응검각인(應檢各人)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여서, 혼용된 것이 아닌가 싶다.
 18) 跋辭와 같은 뜻.
 19) 이 檢안의 편차 정리 방식은 다음 책을 따랐다. 沈義基, 『韓國法制史講義』(三英社, 1997), 246-247.
 20) 應問各人, 應檢各人이 沈義基의 정리에서도 혼용되어 있다.

부분이 많이 있으며 체계적이지 않다²¹⁾는 평을 받았지만, 「檢要」의 이 編次의 존재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다른 검험 문안의 編次가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편차 중 ‘脈錄’ 부분이 ‘무원록에 따른 검시’와 일치하는가라는 부분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이는 뒤의 ‘仰合面 脈錄’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4.1.2 仰合面 脈錄

이 부분은 增修無冤錄, 《屍帳式》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仰面은 신체의 앞면을, 合面은 신체의 뒷면을 뜻하며, 脈錄이란 신체 부위를 열거한 格目を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 수 있다.

- ① 「增修無冤錄諺解」의 《屍帳式》²²⁾에서 “屍帳에 몬져 屍形圖를 긋초고 버거 格目を 긋초니 格目は 곳 仰面에 頂心과 合面에 腦後 卽 아래라 傷處로써 屍帳에 比對호야 傷損호며 完全함을 屍圖와 맞 格目에 一一히 懸錄호라(屍帳에 先具屍形圖호고 次具格目호니 格目は 卽仰而頂心과 合面腦後以下也 | 라 以傷處로 比對屍帳호야 一一懸錄傷損完全於屍圖及格目호라)”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格目’이라고 지정한 부분은 「增修無冤錄諺解」에서 신체 부위를 열거한 부분임이 분명하다.
- ② 「檢要」에서 「增修無冤錄諺解」에서 신체 부위를 열거한 부분을 轉載한 후, 이를 脈錄이라 지칭하였다.
- ③ 「檢要」에서 「增修無冤錄諺解」에서 신체 부위를 열거한 부분은 屍帳에도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무원록에 따른 검시’ 부분에서 신체 부위의 상태를 서술할 때에도 이 순서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檢要의 《編次》를 보건데, 이 ‘무원록에 따른 검시’ 부분은 ‘脈錄’에 해당되는 순서에 위치하고 있다.

21) 沈羲基, 「韓國法制史講義」(三英社, 1997), 247.
 22) 이는 屍帳이라는 문서의 형식을 규정한 내용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脈錄’은 신체의 각 부위를 열거한 格目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 屍帳에 포함되기도 하였고, ‘무원록에 따른 검시’의 서술 순서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때로 이 ‘무원록에 따른 검시’를 ‘脈錄’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4.1.3 法文

法文은 급소 부위와 상처의 판별에 관한 내용을 增修無冤錄의 《應用法物》을 채록하여 실었다. 이는 살인 사건과 관련된 검험 지식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 하겠다.

4.1.4 字訓

字訓은 기본적인 용어의 설명으로, 「增修無冤錄」의 《增修無冤錄字訓》을 채록하였다.

4.2 「檢要」둘째 부분의 구성

두 번째로는 이 책의 대부분을 이루는 각 편들이 이어지는데, 두 개의 목록으로 上下卷 구성을 취하고 있다. 원본의 목록은 실제 내용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上卷:

찔린 것[被刺], 차인 것[被踢], 차여서 내상을 입은 것[被踢內損], 갈비뼈가 부러진 것[折肋], 목이 부러진 것[折項], 밀린 것[被擠], 눌린 것[被壓], 맞은 것[被打], 각각의 진술[各招], 맞은 뒤 병이 난 것[被打後病患], 내동댕이 쳐진 뒤 병이 난 것[揮擲後病患], 간수를 먹은 것[飲瀘], 비상(砒礪)을 먹은 것[服砒礪], 스스로 목을 매단 것[自縊], 맞은 뒤 스스로 목을 매단 것[被打後自縊], 하나의 사건에 두 시신을 검험한 것[一獄兩檢]

下卷:

스스로 물에 빠진 것[自溺], 병(病), 술에 취한 뒤의 증풍[醉後中風], 기운이 끊어진 것[氣窒], 굶주린 가운데 싸우다 기운이 끊어진 것[飢餓中因鬪氣窒], 회사(會查), 검시를 하지 않은 조사[未檢査], 정범(正犯), 간범(干犯), 피고(被告), 간련(干連), 시친(屍親), 검험시 격식상 피해야 하는 경우[嫌格], 존위(尊位), 결사(結辭)

목록을 살펴보면, 흔히 일어나는 살인 사건의 實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회사(會查)」 다음부터는 檢驗文案 작성과 관련된 기타 주요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조 檢案의 구성을 대략 기술하면, 檢案의 첫머리는 檢驗을 하게 된 경위로 시작되었으며, 다음으로 각 증인들의 진술, 시신 검험 내용과 實因 판명, 檢官 나름의 결론에 해당되는 結辭, 시신의 신체 부위를 적어 두고 체크하는 屍帳 등이 이어지는데, 이 순서는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때에 따라서는 문서 내에 관찰사의 題辭가 덧붙기도 하였다. 인조 3년(1625년) 이후로 진술 내용은 구어체로 기술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結辭와 題辭의 경우 약간의 吏讀가 섞여 있더라도 완전한 구어체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듯하다.

「檢要」 《各招》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간증(看證) 양녀(良女) 김 조이의 진술 발췌

저는 이번 2월부터 김치서의 옆집에 살았습니다. 이달 3일 저녁에 주인집 허 조이가 그 며느리 박 조이를 시켜 식혜를 담고 계수를 준비하도록 했는데, 식혜를 빨리 담지 못한다고 꾸중이 심했습니다. 박 조이는 원래 유순한 성품이라 변명도 못하고 가만히 참고서 밤을 지냈는데, 다음날인 4일 이른 아침, 저와 박 조이가 두부를 만든다고 헛간에 들어가 콩을 갈고 있을 때에 허 조이가 또 박 조이를 꾸짖기를, “해가 높이 뜨도록 밥은 짓지도 않고 게으르게 제 병만 챙기니 어찌 하려고 그러냐”라고 하였습니다. 박 조이가 바로 일어나서는 쌀과 콩을 달라 했는데, 허 조이는 애초에 콩과 쌀은 주지도 않고 한마디 대꾸도 없었습니다. 박 조이가 열없이 물러나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기에, 제가 “시어머니가 저렇게 꾸짖으시는데 왜 직접 콩과 쌀을 가져와 빨리 아침밥을 짓지 않아요?”하니, 박 조이가 대답하기를 “직접 쌀과 콩을 가져왔다간 멧대로 많이 쓴다고 꾸지람을 들을까봐 직접 가져오지를 못합니다”라 하였습니다.²³⁾

② 結辭에서 발췌

박 여인은 유순한 성품인데도 까다로운 꾸지람을 많이 들었으니, 쌀과 콩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것을 보면 날마다 겪던 고생을 알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못했으니, 어찌 남편이 마땅히 여겼겠습니까. 그날의 일로 말하더라도, 아침을 좀 늦은 것과 윗옷을 벗었다는 것은 모두 사소한 일에 지나지 않는데 잠깐 사이에 사람을 죽였으니, 죽음은 애처롭고 사정은 슬프습니다. 김치 서가 무지렁이로 아는 것 없는 백성인지라 집안을 다스리는 도리[家齊之道]를 다 갖추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뒤에 있을 어려움을 생각하는 도리[思難之義]²⁴⁾가 마음에 조금은 있었을 터인데, 노모(老母)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데에 화가 난데다 젊은 부녀자가 옷을 벗는 데 더 화가 났습니다. 속에서 치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촌무지렁이 기질에 젊은 나이의 예기(銳氣)까지 겹쳐, 성큼 성큼 쫓아가서는 등 뒤를 때릴 것을 찾다가, 크기도 생각 않고 몽둥이를 주워들어서는 되는데로 후려쳤습니다.²⁵⁾

위의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듯 結辭는 전체적으로 이두의 사용 빈도가 낮고, 文語적인 표현 경향이 좀 더 강하며, 고전을 인용한 표현도 드물지 않게 나오고,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표현이 드물다.

23) 「檢要」 《各招》

“矣身(저는)¹⁾ 自今二月 居在金致西挾幕, 而今月初三日夕, 主家 許召史 使其子婦 朴召史, 釀甘酒 備祭需, 而不能速釀是如(-이라고) 諛責備至. 朴召史 以自來柔順之性, 無一事自明 含默過夜, 而翌日是在(-인) 初四日 早朝, 矣身(저) 與朴召史 造泡次(-차) 入廳磨豆之際, 許召史 又爲諛責朴召史, 曰“日已高矣 尙不炊飯 懶惰養病 何以堪去云爾”, 則朴召史 卽爲起去 請受米豆, 而許召史 初不給米豆 又不答一言, 則朴召史 無聊而退 復入廚下. 故矣身(제가)問 “姑責如彼 何不自取米豆 速炊早飯云爾,” 則朴召史答云 自取米豆 恐招多取濫用之責 不能自取云矣.”

24) 사난지의(思難之義): ‘사난(思難)’이란 「論語」 《季氏》에 나오는 말이다. 분할 때에는 나중의 어려움을 생각하라는 뜻으로, 흥분하여 함부로 행동하다가는 나중에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기 쉬움을 이르는 말이다.

25) 「檢要」 《各招》

“此朴女 以柔順之姿 屢遭苛細之責, 觀於米豆之不敢擅 可驗乎日之備經苦狀. 既不得於姑 安能宜於夫. 雖以伊日事言之, 朝爨之差遲 上衣之解脫 俱不過薄物細故, 而乃於霎時之頃 斷送一縷之命, 其死也 可哀 其情也 甚感是乎跡(이오며), 惟彼致西 卽一蚩蠢 無知之氓耳, 家齊之道 雖難責備, 而思難之義 少宜存心是去乙(이거늘), 乃者始怒於老母之胎惱 繼憤於少婦之脫襦, 憤怒撐中 按住不得, 以若峽谷之愚頑 且兼年少之銳氣, 大踏步趕來 望後心便打, 隨見拾杖 不計大少, 隨手下杖 不分輕重.”

특히, 증인들의 진술에서 빈번히 나오는 ‘矣身(저, 제가, 저는)’, ‘矣徒等(저희들)’이라는 이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앞에 예를 든 《各招》篇에서도 結辭에서는 단 한번도 ‘矣身’, ‘矣徒等’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으나, 結辭 외의 다른 부분에서 ‘矣身’은 62회, ‘矣徒等’은 3회 출현하였다. 「檢要」 전체로 보면, 이 두 표현은 오직 《各招》의 結辭를 제외한 부분에서만 볼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문체상의 특이점과 그 내용으로 보면, 「檢要」 각 편의 내용들은 檢案 전체를 거의 다 실은 것으로 생각되는 《各招》편과 《干犯》편 이후에 조금씩 나오는 「欽欽新書」의 인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檢案 중의 結辭와 題辭에서 채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때에 따라서는 작은 글자로 ‘題’字를 덧붙여 題辭에서 채록하였음을 밝혀 두었다.

각 편들은 주제에 맞는 檢案들 속에서 다양하게 채록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건에 대한 檢案이 주제에 따라 몇 개의 편에 나뉘어져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上卷의 《被打致死男人》, 《被打後病患致死》와 下卷의 「正犯」에 나온 사건을 들 수 있다.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① 《被打致死男人》에서 발췌

아! 사망자는 늙지도 어리지도 않았지만 가난해서, 부모같이 은혜가 막중한 분들도 잘 모시지를 못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한들 처자를 어찌 돌보겠는가. 어찌 그리 제 멋대로였는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는데도 고하지 않고 바로 달아났으니 여자의 도리라곤 전혀 없었지만, [남편은] 가서 타일러 마음을 돌려 보려 하였으니 가장의 기풍이 있었다. 발은 얼고 굶주려서 [못 살겠다는] 무정한 책망에, 힘든 상황 때문이라지만 부끄러운 마음과 스스로의 허물이 앞섰다.²⁶⁾

26) 「檢要」 《被打致死男人》

“唉! 彼死者, 非老非少, 且婁且貧, 恩義莫如父母, 供老末由如誠, 意愛雖切, 妻孥違恤. 其何從心, 有夫有姑, 不告直走, 全沒女子之道, 或往或諭, 期欲回心, 儘是家長之風. 足之凍腹之饑, 無情之責, 雖苦勢所使, 心所愧, 自反之咎居先.”

② 《被打後病患致死》에서 발취

a) 아! 사망자는 늙지도 어리지도 않았지만 가난해서, 부모같이 은혜가 막중한 분도 잘 모시지 못했는데, 사랑하려는 마음이 간절하다 한들 처자식을 어찌 돌볼 수 있었겠는가. 어찌 그리 제 멋대로인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는데도 고하지 않고 바로 도망가서 여자다운 행실이라곤 없었고, [남편은] 가서 타이르기도 하면서 마음을 돌리려 했으니 가장으로서의 도리를 다한 것이었다. 발은 얼고 배도 고프다고 무정하게 책망하니, 비록 고달픈 형편 때문이었다지만 부끄러운 마음과 스스로 죄스러움이 앞섰다.²⁷⁾

b) 아! 저 아무게 질녀(姪女)에게 정이 지극하니 애석해 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겠지만, 고픈 배로 치면 그가 부유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언 말로 치면 그가 쫓아 낸 것도 아니다. 그녀에게 족부(族夫)²⁸⁾가 없었다면 어찌 꾸짖을 수 있었겠는가. 길 가운데에서 잡아들여 멋대로 내동댕이쳤는데, 당시의 거친 행동과 기세는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했을 것이다.²⁹⁾

③ 「正犯」에서 발취

조카딸을 애지중지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춥고 배고프다고 쫓아내지도 않았는데 언 발로 달아났다면, 여자가 신의 없는 것이지 어찌 남자를 탓하겠는가. 목은 분도 있는데 새로 화까지 치솟으니, 중도에서 잡아들여 되대로 내동댕이쳐 버렸다.³⁰⁾

다만, 이 경우는 ①, ②, ③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 표현이 조금씩 다르고, ①, ②의 다른 부분에서 나타난 實因 추정이 被打致死와 被打後病患致死로 달라

27) 「檢要」《被打後病患致死》
 “唉! 彼死者 非老非少 且寡且貧, 恩義莫如父母 供老末由如誠, 意愛雖切 妻孥違恤. 其何從心 有夫有姑 不告直走, 沒彼女子之行, 或往或諭 期欲回心, 盡吾家長之道. 足之凍腹之饑 無情之責, 雖苦勢所使, 心所愧 自反之咎居先.”

28) 족부(族夫): 아저씨뻘 되는 친척.

29) 「檢要」《被打後病患致死》
 “噫! 彼某姪女 既係至情 愛惜雖曰常理, 饑腹非富伊貧 凍足非逐伊走. 女固無族夫 何可責, 而羌中途而捉入 姿其意而閃擲, 想像當場悖舉氣焰 足以戕人.”

30) 「檢要」《正犯》
 “姪女既係至情愛惜, 雖曰常理, 饑腸非富, 伊貧凍足, 非逐伊走, 女固無諒, 夫何可責, 而宿憤陡起, 新怒更激, 羌中途而捉入, 恣其意而閃擲.”

서, 한 사건에 대한 각기 다른 문건에서 채록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아예 문구까지 동일한 경우이다.

① 《被打後服砒礪》에서 발췌

- a) 감히 의심하지 못할 상황에 의혹을 제기하여, 차마 따지지 못할 일을 따졌다.³¹⁾
- b) 【아무개】도 사람일진데, 어찌 감히 고금(古今)에 없었을 의심을 품어 짐승만도 못한 말을 하는가?³²⁾

② 《被告》에서 발췌

- a) 【아무개】도 사람인데, 어찌 감히 고금(古今)에 없었을 의심을 품어, 짐승만도 못한 말을 하는가? 따지고 싶지 않은 일인데다, 명확하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³³⁾
- b) 죄는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나, 죽음은 자살이다.³⁴⁾
- c) 감히 의심하지 못할 상황에 의혹을 제기하여, 차마 따지지 못할 일을 따졌다.³⁵⁾

채록된 분량에 있어서, 때로는 수 페이지에 걸쳐 한 사건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기도 하고, 때로는 일부 구절이나 경구와 같은 느낌의 언급이 짧게 채록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구성은 전반적 이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면도 있고, 한 사건 전체의 상황을 다 알기는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結辭나

31) 「檢要」《被打後服砒礪》
“起疑於不敢疑之地，致詰於不忍詰之事。”

32) 「檢要」《被打後服砒礪》
“【某】亦人耳，古今必無之疑，何敢起於心，而禽犢不若之醜，何忍發諸口?”

33) 「檢要」《被告》
“【某】亦人耳，古今必無之疑，何敢起於心，而禽犢不若之醜，何忍發諸口? 其在不欲索言之道，亦難歸於斷然是實。”

34) 「檢要」《被告》
“罪固涉疑，死亦自判。”

35) 「檢要」《被告》
“起疑於不敢疑之地，致詰於不忍詰之事。”

題辭의 실례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전반적 구성을 다시 돌아본다면, 책 앞머리에 검험에 대한 간단한 속지 사항을 적고, 이후에 다양한 사례들을 주제별로 정리한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오늘날 각종 ‘실무 사례집’이나 ‘실무 지침서’를 떠올리게 한다. 19세기에 나온 檢案 정리집들은 學習書의 성격을 갖는 경우도 많지만, 檢要 는 사건 사례의 분석보다는 해당 實因에 대한 사례나 문구를 빠르게 찾아보기에 편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學習書’라기보다는 ‘현장 실무를 위한 사례집’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된다.

序跋을 비롯하여, 이 책에 대한 편찬 의도를 알 수 있는 기타 사항은 전혀 없지만, 「檢要」라는 제목이 ‘檢驗의 要領’, ‘檢驗文案 作成의 要領’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과 전체의 내용 구성을 생각할 때, 이 책은 조선시대의 ‘살인 사건 수사 실무 사례집’, ‘살인 사건 수사 서류 작성 참고서’라 하더라도 무리가 없다 하겠다.

5. 자료의 특징

朝鮮時代에 나온 법의학 관련 서적으로는 「審理錄」, 「欽欽新書」, 「秋官志」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전문적 법의학 서적으로는 「新註無冤錄」, 「增修無冤錄諺解」, 「增修無冤錄大全」 등이 있다.

현재 규장각에는 완전한 형식을 갖춘 檢案 자료들 외에, 檢案을 발췌 정리한 서적들³⁶⁾이 수십 종 남아 있는데, 이들은 일종의 사례집, 판례집의 성격을 띠는 책들로서, 사건 실무의 참고 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중 대부분은 19세기에 편찬되어 있으며, 그 성격상 「檢要」와 유사한 면이 많다. 저자는 관찰사나 지방 수령을 지낸 사람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이고, 檢案

36) 김호, “규장각 소장 검안(檢案)의 기초적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4권(1998). 에서는 이를 ‘跋辭類 모음집’으로 분류하였으나, 이 부류로 분류된 서적들은 단순히 跋辭만 모은 것이 아니라, 각종 살인 사건 관련 문서들의 발췌 정리집에 가깝다.

전체를 신기 보다는 跋辭, 題詞 위주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특히 「檢狀, 審要」는 대부분의 서적들과는 달리 시간별·지역별 구성을 취하지 않고, 「檢要」와 같은 방식으로 實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목할 만한데,³⁷⁾ 「檢狀」은 實因別로 跋辭를 정리하였으며, 「審要」는 實因別로 題詞를 정리하였다.³⁸⁾

하지만, 檢驗의 기본 사항들을 정리한 후 實因別로 跋辭, 題詞를 발췌하고, 마지막으로 檢案 작성 시의 주요 사항들(正犯, 干犯, 嫌格 등등)에 대한 사례를 정리한, ‘실무 사례집’으로서의 完整的 체계는 「檢要」의 특징이라 하겠다.

6. 「檢要」에 나타난 법의학용어

6.1 脈錄

이에 대해서는 앞서 ‘編次’와 ‘仰合面 脈錄’에서 이미 논하였는데, 脈錄이란 기본적으로 신체 부위를 열거한 格目を 말하며, 때로 ‘格目の 순서대로 검시한 내용을 서술한 것(무원록에 따른 검시)’을 가리키는 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2 件作

‘作’자에는 여러 뜻이 있지만, 이 경우 木作, 石作, 瓦作의 예와 같이 ‘工人’, ‘工匠’의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件’자에 대해서는 《增修無冤錄字訓》의 내용을 쫓아서 ‘件’에 대해 “午와 같다. 光明의 뜻을 취한 것이다(同午, 取見光明之義)”라고 풀이하였다.³⁹⁾ 「增修

37) 이 외에 「愼書」가 實因 중심의 구성을 가진 책이 아니었을까 추정되는데, 각권의 제목을 통해 볼 때 사건을 실인에 따라 분류한 후 제사, 발사 등을 수록한 것으로 보이나 구타사건 이외에 여타의 실인에 해당하는 사건기록을 모은 다른 책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규장각 해제를 참조).

38) 「審要」는 거의 題詞가 위주이지만, 일부 跋辭도 포함되어 있다.

39) 안상우, 이연희, 전혜경, 「國譯 檢要」(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10.

無冤錄」, 「檢要」 안에서는 이 글자가 ‘仵作’이라는 단어 외에서 사용된 경우가 없어서, ‘仵作’에서의 ‘仵’에 대하여 이 해석을 적용함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午’ 자체에는 ‘光明’의 뜻이 없는데, 아마도 이는 午時가 해가 한창 밝은 때이니, 여기에서引申하여 ‘午’가 ‘光明’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다고 본 듯하다. 이에, ‘仵’자를 ‘午’와 古今字 관계로 보아 같은 뜻을 갖는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준에 사용된 예가 없는 해석을 부여하고, 이것을 가지고 두 글자가 동일한 뜻을 갖는다고 본 것이라 무리가 많다고 하겠다.

「欽欽新書」에서는, “오(仵)는 오(伍)와 통하는데, 마주 대하는 것을 오(仵)라 한다. 시체를 뒤집는 사람은 두 명이 짝이 되어 마주 들기 때문에 오작(仵作)이라고 이름한 것이다(仵 與伍通 偶對曰仵也 舉屍翻轉之人 兩人爲偶 與之對舉 故名曰仵作也).”라 하였는데, ‘伍’에 ‘한 패’, ‘동료’ 정도의 뜻이 있기는 하지만, ‘伍’가 원래 다섯 명의 한 조를 말하는 것임을 생각하면, 두 사람이 짝이 되는 것을 ‘仵’와 ‘伍’의 뜻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仵作은 ‘仵作’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의미에 더욱 문제가 생긴다.

또한, 仵作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殮葬 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뜻도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仵作’의 의미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고증이 《中國古代法醫學發展史及相關文獻研究》⁴⁰⁾에 실려 있기에 일부를 발췌하여 요약하였다.

仵作은 ‘仵作行人’ 혹은 ‘行人’이라고도 부르는데, 보통 官府에서 시체의 검험을 맡은 사람으로 알고들 있지만, 실제로는 윗글의 중국 고대 사법 검험 체계에 관한 논술에서 밝혔듯, 결코 法醫 檢驗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며, 단지 시체를 운반하고, 깨끗이 닦는 雜役을 맡았을 뿐이고, 해당 지역의 正官이 바로 檢驗을 책임자였던 것이다.

봉건 사회에서는, 官員이 비록 檢驗을 책임지더라도 꺼려지는 작업들은 직접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모두 仵作이 처리했다.

‘仵作’이라는 말은 본래 ‘어긋나는 점, 사회의 일반적 풍속에 어긋나는 면이

40) 黃玉環, “中國古代法醫學發展史及相關文獻研究,” (碩士學位論文, 貴陽中醫學院, 2007).

있다’는 뜻이 있다. 「管子·心術上」에 “自用則不虛, 不虛則作於物矣”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作’자는 ‘違背, 抵觸’의 뜻이다. 이런 글자를 직업의 이름에 썼다면, 그 사회적 함의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作’이라는 말은 현존 문헌 전적 중에서는 五代 때 처음 출현하는데, 和凝의 「疑獄集」과 鄭克의 「折獄龜鑒」에 실린 「府從事」에 다음과 같은 용례가 있다.

근래에 어떤 사람이 행상 나갔다가 되돌아와 보니, 아내가 타인에게 피살되었는데 그 머리가 잘려 없어졌다. 한편으로는 비통하고, 한편으로는 공포에 질려, 처가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처가에서는 곧 사위의 소행으로 의심하여, 그를 관가에 고발했다. 그는 심한 고초를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처를 살해했다고 허위 자백하기에 이르렀다. 사건 심리가 모두 종결된 후, 부(府)의 한 종사(從事: 관직명)가 홀로 의구심을 품고, 이 사안을 다시 철저히 조사할 것을 자청하여, 태수(太守)가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종사는 관할 지역 안의 모든 장의업(葬儀業) 종사자(作作行人)들을 불러, 근래 민가에서 거행한 장례와 안장처를 모두 진술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면서 혹시 장례 거행에 의심할 만한 것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어느 곳의 한 부자가 상례를 치렀으나, 단지 유모가 죽었다고만 말하였습니다. 오경(五更: 새벽 3-4시) 초에 담장 너머로 관을 함께 들어내는데, 너무 가벼워 안에 아무 물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모처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급히 사람을 보내 발굴해 보니, 한 여자의 머리 밖에 묻혀있지 않았다. 그 머리를 가져다가 죄수에게 확인시킨 결과, “내 처가 아니다”라고 답하였다. 이윽고 그 부자를 잡아들여 신문하였더니, 마침내 모든 사실을 자백하였다. 유모를 살해하여 그 머리만 관에 담아 매장하고, 그 시체는 죄수의 처의 머리로 바꾸어 자기 방안에 감추어 두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무고한 사위는 죄를 면하고 풀려났다.⁴¹⁾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 作作이 당시 관부의 雜役을 수행하였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체 매장을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이 본래 직업이었다. 본래의 직업이 시체와

41) 이 번역은 김지수, 「折獄龜鑒 번역」(소명출판, 2001)을 따랐다.

“近代有人, 因行商回, 見妻爲人所殺, 而失其首, 既悲且懼. 以告妻族, 乃執婿送官, 不勝捶楚, 自誣殺妻. 獄既具, 府從事獨疑之. 請更加窮治, 太守聽許. 乃追封內作作行人, 令供近日與人家安厝(停柩待葬)去處, 又問‘頗有舉事可疑者乎?’ 一人對曰: ‘某處豪家舉事, 只言租卻你子. 五更初, 牆頭異過凶器, 極輕, 似無物. 見瘞某處.’ 亟遣發之, 乃一女子首. 令囚驗認, 云非妻也. 遂收豪家鞠問. 具服殺你子, 函首埋瘞, 以屍易囚之妻, 畜於私室. 婿乃獲免.”

직접 관련되어서 이 계통 일을 잘 알기에 官府의 雜役に 차출되었을 뿐이지, 결코 관부 직속은 아니었던 것이다. 문헌을 고찰하면, 이러한 정황은 宋代에까지 이어졌으며, 元代에 와서는 시체 매장을 하는 사람들 외에 백정들이 추가되었다.

6.3 上釵, 下釵

「檢要」《服砒礪致死》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구토로 기운이 다 거꾸로 올라갔으니 항문에 넣어본 은채(銀釵)는 변하지 않을 것이 뻔했다. 입안에는 찌꺼기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은채[上釵]의 색이 변했다.⁴²⁾

내용상 上釵는 입에 넣어 본 銀釵, 下釵는 항문에 넣어 본 銀釵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6.4 壓死

「檢要」《价川郡 吉召史 三檢》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 비썩 마른 것은 완연한 병색(病色)이고, 눈이 튀어 나오
고 혀가 나온 것은 압사(壓死)의 형증이다.

『增修無冤錄』의 압사(壓死)에는 나무에 깔리거나, 담장이 무너져 깔리는 등으로 급소(목도 포함되는)를 눌러 죽은 것도 포함된다. 이 사건은 안구 돌출과 설침 돌출의 소견으로 보아 자루를 덮어씌우고 목을 누른 것으로 보이는데(현대 법의학에서는 질식사 중 manual strangulation에 들어감), 『增修無冤錄』의 압사에는 사람이 손으로 직접 누른 경우에 대한 언급은 없고(‘場着要害處’라는 표현은 사

42) 「檢要」《服砒礪致死》

“氣已逆於吐 下釵固知不變, 滓尙餘於口 上釵所以偏變.”

람이 누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능사(勒死), 피인능사(被人勒死)는 주로 끈으로 목이 졸린 것을 말한다. 압사의 의미를 사람에게 목과 같은 급소를 눌린 것에까지 확장시켜 해석한 듯하다.

현대 법의학에서는 타인이 목을 조른 경우, 손으로 압박했던 끈으로 압박했던 모두 strangulation에 들어가나, 「증수무원록」의 경우 손으로 누른 경우 압사(壓死)에, 끈으로 압박한 경우 피인능사(被人勒死)에 들어간다는 가정이 가능하겠다.

6.5 목과 턱 주위 신체 부위에 관한 혼란

檢要」의 《脈錄》에서는 「增修無冤錄」을 인용하여 신체 부위를 나열하였는데, 턱 주위 부위에 있어 일부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함해(頷頰) 【턱밑, 함(頷)은 위에 있고 해(頰)는 아래에 있으며 모두 후골(喉骨) 위에 있다.】, 인후(咽喉) 【해(頰) 아래에 있다. 후(喉)는 앞에 있으면서 공기를 소통시키고, 인(咽)은 뒤에 있으면서 음식물을 삼킨다.】, 식기상(食氣頰) 【상(頰)은 상(嚙: 목구멍)과 같으며, 인후를 말한다.】

일다 보면 咽喉와 食氣嚙의 차이가 잘 구별되지 않고, 頷과 頰의 구별도 정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洗冤集錄」, 《論沿身骨脈及要害去處》에서 “결분의 위가 경(頸), 경의 앞이 상후(頰喉), 상후의 위가 결후(結喉), 결후의 위가 해(胘), 해의 양옆이 곡함(曲頷), 곡함의 양 옆이 이(頤)이다(缺盆之上者頸, 頸之前者頰喉, 頰喉之上者結喉, 結喉之上者胘, 胘兩傍者曲頷, 曲頷兩傍者頤)”라고 하였음을 참고하면 의미가 분명해 진다.

6.6 상악(上齶)에 대한 해석

《脈錄》에 나오는 ‘上齶’을 「增修無冤錄諺解」에서는 ‘입웃거엄’이라 하였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입천장’으로 해석하였고, 「역주 증수무원록 언해

」⁴³⁾에서는 ‘윗 어금니’로 해석하였다. 한문으로 본다면 ‘上齶’의 뜻은 ‘입천장’, ‘잇몸’을 뜻하는 경우는 있어도, ‘윗 어금니’를 뜻하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문맥상으로도 《脈錄》의 앞 내용에서 ‘위아래 어금니 뿌리’라는 말을 이미 하였기에, ‘上齶’을 ‘윗 어금니’로 보게 되면 의미가 중복되는 경향이 생긴다. 언해와 관련해서는 국어사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입천장’이라는 해석이 좀 더 정확한 것으로 생각된다.

6.7 ‘凡打著分寸稍大’의 해석에 대한 「增修無冤錄諺解」의 문제점

檢要 의 《法文》에서는 增修無冤錄 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다.

정수리, 신문(顛門), 귀뒤밑[耳根], 인후(咽喉), 명치, 요안(腰眼), 아랫배, 음낭은 얼마 안 되어 죽는 곳[速死之處]이고, 뇌후(腦後), 두로(頭顱), 흉당(胸膛), 등마루[脊背], 옆구리[脅], 늑골은 반드시 죽는 곳[必死之處]이다. 살이 검푸르고 피부가 까지고, 살이 터지고 뼈가 깨지고, 뇌장(腦漿)이 나오고 피가 흐르는 것은 치명상이다. 얼마 안 되어 죽는 곳에 치명상을 입은 경우 3일을 넘기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 곳에 치명상을 입으면 10일을 넘기지 못한다. 맞은 상처 부위가 점점 커지고 독기가 쌓여 몸속으로 들어가면 대략 하루 이틀 뒤에 죽게 되고, 상처의 크기가 매우 중(重)하고 독기가 자흑(紫黑)하며 【자줏빛이 심하면 검은색을 띤다.】(독기가) 즉시 몸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사망할 수 있다.⁴⁴⁾

이 부분은 원래 「洗冤集錄」, 《驗他物及手足傷死》에 있던 내용이 「無冤錄」에 인용되어 「增修無冤錄」에까지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洗冤集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43) 송철의 외 3인, 「역주 증수무원록 언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44) 안상우, 이연희, 전해경, 「國譯 檢要」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7.

“頂心·顛門·耳根·咽喉·心坎·腰眼·小腹·腎囊，此速死之處，腦後·頭顱·胸膛·脊背·脅·肋，此必死之處。肉青黑皮破，肉綻骨裂，腦出血流，此致命之傷，致命之傷當速死之處，不得過三日，當必死之處，不得過十日。凡打著分寸稍大，毒氣蓄積向裏，可約得一兩日後身死。若分寸深重，毒氣紫黑【紫過爲黑】，即時向裏，可以當下身死。”

凡打著兩日身死, 分寸稍大, 毒氣蓄積向裏, 可約得一兩日後身死. 若是打著當下身死, 則分寸深重, 毒氣紫黑, 即時向裏, 可以當下身死.

‘凡打著分寸稍大, 毒氣蓄積向裏, 可約得一兩日後身死’의 내용을 「洗冤集錄今釋」에서는 현대 법의학의 ‘속발성 쇼크’로 해석하였다.⁴⁵⁾ 상처 부위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은 속발성 쇼크에서 피하 출혈이 시간이 지나면서 넓어지는 것으로 보았고, 독기가 안으로 들어가 죽는 것은 myoglobin 등에 의한 crush trauma, crush syndrome으로 보았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분석으로 보인다.

「增修無冤錄諺解」에서는 ‘凡打著分寸稍大’의 ‘稍’를 ‘퍽’으로 해석하였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 ‘퍽’으로 해석하게 되면 ‘稍大’는 ‘퍽 크고’라고 풀이되는데, 이렇게 되면 ‘深重’의 뜻과 어느 정도 차이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진다. 당시의 검시에서 상흔의 크기[分寸]는 상당히 정확하게 재어졌음을 생각하면 이는 어색한 면이 없지 않으며, 文理상에서도 「洗冤集錄今釋」의 해석이 좀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6.8 氣窒과 氣絕

「檢要」에는 《氣窒致死》, 《飢餓中因鬪氣窒死》 등의 편이 있다. 여기에서 ‘氣窒’은, 「檢要」 전반의 용례로 보아 「增修無冤錄」의 ‘氣絕’과 동일한 의미인데, 특히 《飢餓中因鬪氣窒死》의 다음 부분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

배가 말라서 폭 꺼져있는 것은 모두 굶어죽은 형증이고, 고환이 오그라들어 올라간 것은 기가 끊어져 죽은 경우의 법문과 일치하니, 사실을 캐보면 싸움 때문이므로 사망 원인은 ‘글자 많은 것을 꺼리지 말라’라는 글⁴⁶⁾을 따라서 굶주

45) 黃瑞亭 陳新山 主編, 「洗冤集錄今釋」(北京: 軍事醫學科學出版社, 2007), 147.
46) 실인을 너무 간략하게만 적으려고 하지 말라는 「增修無冤錄」의 언급을 말한다. “正官이 맛당히 親히 實因을 메울 꺼시어늘 近來 京外 檢法이 다만 結項이나 或 刃傷 等 二字로써 드라 기록하니 크게 法意 아닌 디라 이젠 後는 各 項 스스로 죽으며 죽기를 님은 거슬 불히 分변호야 恣세히 기록호디 或 다른 違端이 이서 잡아 定키 어려운 디 미이엇거든 연유를 갓초아 卞 들고 글즈 만흠을 혐의치 말나(正官이 宜親填實因이어늘 近來京外檢法

린 상황에서 싸워 기가 끊어져 죽은 것으로 기록한 후...⁴⁷⁾

檢要의 내용이 實因別로 구성되어 있음을 생각하면, 《飢餓中因鬪氣窒死》의 내용은 實因이 氣窒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현대, 내용의 實因에서는 ‘氣絶’로 표현하였음을 본다면, 氣絶과 氣窒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6.9 여열(臚列)의 의미

「檢要」 안에 《시친여열(屍親臚列)》이라는 편목(篇目)이 있는 것을 보면, 당시에 법률 용어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렵다. 원래 이 단어는 ‘진열’, ‘나열’의 뜻으로 쓰이는 것이 보통인데, 「檢要」에서는 《被告》에서 한번, 《屍親臚列》이라는 편목에서 다시 한번 사용되었다. 《被告》에서 사용된 용례는 시친이지만 동시에 간련(干連)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屍親臚列》의 내용에서는 ‘臚列’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내용상 지목된 사람들은 역시 屍親이자 간련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이로 미루어 보건데, 해당 인물이 시친에 해당되지만 동시에 간련 쪽에도 해당되어, 일반적인 시친이나 간련과 구분해야 할 경우에 쓴 용어가 아닌가 추측해 본다.

6.10 축(築)의 의미

《一獄兩檢》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이 只以結項或刃傷等二字로 懸錄호니 大非法意라 今後는 各項自死被死를 明辨詳錄호디 或係有他違端호야 難於執定則具由以懸호고 毋嫌字多호라.”

47) 안상우, 이연희, 진혜경, 「國譯 檢要」(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134.

「檢要」 《一獄兩檢》

“臍肚貼腔, 都是餓死之形症, 腎子縮上, 又合氣絶之法文, 而究其實, 則由於鬪是乎等以, 實因段, 從毋嫌字多之文, 以飢餓中, 因鬪氣絶致死, 懸錄後云云.”

맨손으로 들어붙어 싸울 때에, 손을 사용하면 ‘타(打: 때리다)’라고 하고, 발을 쓰면 ‘척(踢: 차다)’이라 하고, 머리를 사용하면 ‘촉(觸: 들이받다)’라 하고, 무릎을 쓰면 ‘축(築: 짓다)’이라 한다.⁴⁸⁾⁴⁹⁾

여기에서 ‘築’은 무릎으로 짓는 것을 말하며, 「檢要」 안에서 대체로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增修無冤錄」에서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增修無冤錄字訓》을 인용한 「檢要」 《字訓》에 다음과 같이 풀이한 예가 있다.

築倒【築猶俗稱지쳐, 如牛馬之築倒謂지쳐너머지고, 如築踏謂지치고발피고】

이 풀이로 본다면 ‘築’은 ‘지치다’로 풀이되며, 이는 현대 국어의 ‘짓다’에 해당된다.⁵⁰⁾ ‘무릎으로 짓다’는 말을 흔히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 용어가 항상 무릎을 사용한 타격과 관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漢語大辭典」⁵¹⁾의 풀이는 다음과 같다.

① 搗土的杵 ② 搗土使堅實 ③ 修建, 建造 ④ 居室; 建築物 ⑤ 打, 擊 ⑥ 塡塞; 裝塡 ⑦ 拾取 ⑧ 量名 ⑨ 通“祝”. 切斷 ⑩ 通“妯”

역시 ‘무릎으로 짓다’로 풀이될 수 있는 의미는 없으며, 「增修無冤錄」 전체를 통틀어도 분명히 ‘무릎으로 짓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 표현은 없다. 하지만, 「檢要」에서는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무릎으로 짓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欽欽新書」에서도 이러한 의미로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여서, 당시의 檢驗文案에서 ‘築’자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48) 안상우, 이연희, 전혜경, 「國譯 檢要」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107.
49) 원문에 인용하였다는 표시는 없지만, 이 언급은 「欽欽新書 <首從之別·八>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50) 송철의 외 3인, 「역주 증수무원록 언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476.의 ‘지티이단’에 대한 주석을 참조.
51) 羅竹風 主編, 「漢語大辭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0).

7. 「檢要」에 나타난 其他 特記 사항들

7.1 腎囊의 縮上 관찰을 통한 氣窒死 판별

氣窒死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하지만 시체에 치명적이라고 생각되는 傷痕이 없는 경우이므로, 판단에 곤란을 겪기 쉽다. 「增修無冤錄」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擧丸이 縮上되어 있는 것⁵²⁾을 확인하여 氣窒死임을 판단하게 하였다. 「增修無冤錄諺解」 《應用法物》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싸우다 죽은 경우를 검험할 때에, 비록 양쪽 사람이 분명하지만 시체 상에 상흔이 전혀 없으면 어찌 요해치명처(要害致命處)를 정하는가. 이는 반드시 다친 사람이 본래 오래된 병인 기질(氣疾)⁵³⁾이 있었거나, 싸우기 전에 술을 마셔 취하였다가 싸울 때에 충격을 받아 기운이 끊어져 죽은 것이니, 이런 경우는 고환 하나나 둘이 오그라들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운 초탕(醋湯)을 부드러운 옷이나 솜 종류에 적셔서 한식경만 덮어 두었다가 오작(件作)과 행인(行人)에게 손으로 아랫배 밑을 밀어 만지면서 누르도록 하면 고환이 저절로 내려오는데, 이것이 그 증험이다.⁵⁴⁾

이러한 이 방법은 「檢要」 안에서 수차 사용되었는데, 「增修無冤錄」의 언급과 달리 반드시 술에 취하거나 호흡기 계통 병이 있었던 경우만이 아니더라도 氣窒死로 판명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개념이 완전히 일치된다는 결론은 위험하겠으나, 여러 면에서 氣窒死는 현대의 ‘원발성 쇼크’와 유사하다고 보이는데, 원발성 쇼크에 대하여 현대 법의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52) 고환은 올라가더라도, 고환집은 부어 있을 수 있다. 「國譯 檢要」 20의 내용 참조.

53) 氣疾: 호흡기 계통 질환.

54) 「增修無冤錄諺解」 《應用法物》

“凡檢爭鬪致死에 雖二主 | 分明而死上에 並無痕損이면 何以定要害致命處오 此必是被傷人이 舊有宿患氣疾이어나 或爭鬪前에 飲酒致醉라가 至爭鬪時有所觸犯호야 氣絶而死也 | 니 如此者는 多是腎子 | 或一箇 | 어나 或兩箇 | 縮上不見호는니 須用溫醋湯호야 蘸軟衣服이어나 或綿絮之類호야 罨一飯久 | 라가 令件作行人으로 以手揉按小腹下호면 其腎子 | 自下호는니 卽其驗也 | 라.”

원발성 쇼크(primary shock)란 비교적 단순하고 정상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 경미한 外力이나 말초적 자극이 가해졌을 때 심혈관계의 억제 반사가 촉발되어 반사적으로 혈관 운동이 실조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심장부, 頸動脈洞, 咽喉部, 胸部, 腹部에 자극이 가해지거나 陰囊, 子宮頸部 등에 외력이 가해지면 迷走神經을 비롯한 副交感神經系가 자극되어 반사적인 心停止를 초래하거나 극적으로 순환계가 허탈에 빠진다. 대개 자극이 가해진 후 수초 내지 길어야 1-2분 내에 사망하므로 즉시성 생리사(instantaneous physiologic death)라고도 한다. ... (중략)... 시체에서는 급사의 일반 소견과 더불어 毛細血管 및 小靜脈의 확장을 볼뿐, 특이한 소견을 보지 못한다. 따라서 진단은 오직 해부를 통해 다른 사인을 배제하고, 믿을만한 목격자의 증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⁵⁵⁾

원발성 쇼크는 현대 법의학에서 역시 ‘다른 사인을 배제하고, 믿을만한 목격자의 증언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다. 氣窒死와 원발성 쇼크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辜丸의 縮上 현상은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7.2 銀釵를 사용한 증독사 판정

중국에서는 民國 초기까지 여전히 전통 법의학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1930년 북경대학에 법의학 교실을 설립하여 서구 법의학 도입의 선구자가 된 林几는 이러한 전통 법의학에 대한 감별 계승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對洗冤錄駁正之實驗》, 《檢驗 <洗冤錄> 銀針檢毒法不切實用意見書》, 《已腐溺尸溺死液痕迹之証出新法》 등등의 논문을 발표하여 전통 법의학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

이중, 《檢驗 <洗冤錄> 銀針檢毒法不切實用意見書》에서, 단백질이 부패하며 발생하는 硫化氫(황화수소, H₂S)와 硫化物(황화물)이 銀을 만나면 硫化銀(황화은, Ag₂S)이 생겨서 항상 검게 변하며, 시체가 썩은 냄새가 심할 때에는 항상 이러한 현상이 있고, 銀釵를 糞便 속에 넣어 두어도 변할 수 있다고 하였다.⁵⁶⁾

55) 윤중진, 「법의학」 (고려의학, 1993). 80.

56) 다음 두 논문의 언급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賈靜濤, “中國法醫學史研究60,” 『中華醫史雜誌』 第26卷 第4期(1996. 10), 232.

閔曉君, “近代對《洗冤錄》的批判,” 『唐都學刊』 第21卷 第6期(2005. 11), 137.

물론 전통 법의학에서도 銀釵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정확성을 완전하게 담보할 수 없음을 인식하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下鉞는 기본적으로 향문에 넣게 되어 있다.⁵⁷⁾ 하지만, 林几의 주장과 어긋나게, 「檢要」에는 銀釵를 사용해도 색이 변하지 않은 기록이 자주 나오며, 향문에 銀釵를 사용했을 때에도 색이 변하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다. 또한, 규장각 검안 중에서는 치질로 사망하여 향문 주위가 심하게 썩은 상태에서 향문에 銀釵를 사용했는데도 색이 변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다.⁵⁸⁾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7.3 좌별 증후군(crush syndrome)의 증상으로 생각되는 언급

《발에 차여 죽은 남자(被踢致死男人)》에는 “소변이 막히고 신문(顛門)이 붉어졌고[紅], 입은 벌어져 있고 손은 펼쳐져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다.⁵⁹⁾ 전반적인 문맥으로 보아, 사망자는 발에 차여 증상을 입은 후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보인다. 「增修無冤錄」에 ‘凡打著分寸稍大, 毒氣蓄積向裏, 可約得一兩日後身死’라 하여 속발성 쇼크로 보이는 현상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이로 인한 crush syndrome의 증상 중 하나인 소변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檢要」의 기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통 법의학 서적에 언급하지 않았던, 하지만 현대 법의학으로 볼 때에는 의미 있는 신체 현상의 기록이라 하겠다.

7.4 發變과 屍斑

「增修無冤錄」을 인용한 《法文》에서는 진짜 상처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에

57) 「增修無冤錄診解」, 《中毒死》

“銀釵와 飯鷄잇 法이 다 的確디 못호고 오직 粘飯 條 | 詳備호야 可히 行호암즉 흔 디라 이에 갓초 기록호야 卽 상고호야 糞회를 즈뢰게 호노라.”

58)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janggak.snu.ac.kr>). “박계환 시신 검험 문안. 시장屍帳 맥록脈錄,” 「司法稟報(甲)」(17278-1-128-奎) 0076책.

59) 안상우, 이연희, 전혜경, 「國譯 檢要」(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21.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상처를 검험할 때는 반드시 손가락을 사용하여 【검시관 본인의 손】 푸르고 붉은 곳을 눌러보는데, 진짜 상처는 굳고 단단하며 손가락을 눌렀다 떼어보아도 색이 변하지 않고, 그 위에 물을 떨어뜨렸을 때 물방울 【머물러 있는 것이 구슬 모양과 비슷하다.】 이 흠어지지 않는다. 발변(發變)된 곳이라면 손가락으로 눌렀다 떼면 바로 흰색이 되고, 위에 물을 떨어뜨리면 물이 머물러 있지 않는다. ○ 발변(發變)은 인체 배 속의 피가 사후에 밖으로 흠어지지만 모여서 맺히지는 못하여 떠오른 것이다. 살아 있을 때 맞아서 기운이 끊어지면 피가 맺혀 상처가 되는데, 사람의 피는 기(氣)에 붙어서 운행하니 기가 막히면 피도 막히는 까닭에 굳고 단단한 것이다.⁶⁰⁾

‘發變’이라는 표현은 「檢要」 안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시체의 일반적 변화’ 정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法文》의 내용은 그 생성 원인에 대한 설명과 현상에 대한 언급으로 보건데 ‘시반(屍班-livor mortis)’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 법의학에서도 피하출혈(subcutaneous hemorrhage)과 시반은 때때로 감별을 요하는데, 이 문단의 이야기도 양자의 감별을 말하고 있다.

7.5 표모피(漂母皮)에 대한 언급

표모피에 대한 현대 법의학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

물 속에서 일정시간 경과되면 팔다리의 표피, 특히 손발을 비롯하여 무릎과 팔굽의 角質層이 물에 부풀어 희어지고 주름이 잡힌다. 이는 浸軟現象(maceration)으로서 그 모양이 손을 물에 오래 담구고 빨래하는 여자의 손에서 보는 것과 같다하여 표모피라 한다.⁶¹⁾

「檢要」의 「自溺致死」에는 ‘手足之皴白’, ‘脚底之皴白’, ‘足底皴白’ 등의 언급이 있는데, 이는 위에서 말하는 표모피(washerwoman’s skin 또는 bleached wrinkled skin)임이 분명해 보인다.

60) 안상우, 이연희, 전해경, 「國譯 檢要」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8.
61) 윤중진, 「법의학」 (고려의학, 1993). 168.

8. 결 론

「檢要」는 1820년에서 1865년을 전후한 시기에 저술된 법의학서로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책이 집필된 당시는 中央集權체제의 강화로 인한 지방 수령의 업무 증가, 사회적 변동의 심화로 인한 각종 사건의 증가가 일어났던 시기로, 수령들은 복잡한 법률 체계 속에서 사건 처리를 위해 실용적인 참고 서적을 필요로 하였다. 이로 인하여 18세기 말부터 법전뿐 만 아니라 각종 법률 참고서·목민서·법의학 서적이 다양하게 편찬 되었다. 여러 업무 중에서 殺人事件에 대한 檢驗文案 작성은 수령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분류되어서, 이와 관련된 서적들도 여러 종류가 편찬 되었다. 아울러 「檢要」의 편찬은 세종시대에 나온 「新註無冤錄」 이후 「增修無冤錄」과 「增修無冤錄諺解」, 「審理錄」으로 이어지는 전통 법의학의 계통을 잇는 연장선상에 있다.

「檢要」는 앞머리의 檢驗의 주요 사항들과 檢驗文案에서 발췌된 各篇들로 구성되는데, 上下卷으로 나뉘어져 있다. 앞머리의 내용은 「增修無冤錄」에서 발췌한 것이며, 뒷부분의 내용은 檢驗文案의 結辭와 題詞에서 발췌한 것이 대부분이다. 단, 《各招》만은 檢驗文案 전체를 다 실어 놓은 것으로 생각되며, 끝에 가서는 「欽欽新書」의 인용이나, 어휘 풀이 등의 내용도 조금 보인다.

현재 규장각에는 檢案 작성의 참고서, 학습서로 분류 될 수 있는 책들이 수십 종 남아 있지만, 檢驗의 기본 사항들을 정리한 후 實因別로 跋辭, 題詞를 발췌하고, 마지막으로 檢案 작성 시의 주요 사항들(正犯, 干犯, 嫌格 등등)에 대한 사례를 정리한, ‘실무 사례집’으로서의 完整的 체계는 「檢要」만의 특징이라 하겠다.

또한 「檢要」에는 사망의 원인을 주검의 상태와 관련지어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어 오랜 기간 동안 법의학과 관련된 연구 성과와 경험이 축적되어 왔음을 보여 준다. 이로써 우리는 검안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이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활동해 왔으며,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시켜 왔음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책에는 당시의 법의학 용어를 좀 더 명확히 고증할 수 있는 단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가치 있는 법의학적 기술들을 발견할 수 있어 향후 관련 분야 연구에

빼놓을 수 없는 참고자료라 믿어진다.

<참고문헌>

- 沈義基. 韓國法制史講義. 三英社, 1997.
- 李榮根, 徐相庸 註譯. 「大典通編」. 法制處, 1963.
-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대 사회사 연구반.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아카넷, 2000.
- 三木榮. 朝鮮醫書誌. 學術圖書刊行會, 1983.
- 안상우, 이연희, 전혜경. 「國譯 檢要」.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 法制處 編. 秋官志. 法制處, 1975.
- 김지수. 折獄龜鑑. 소명출판, 2001.
- 黃瑞亭, 陳新山 主編. 「洗冤集錄 今釋」. 軍事醫學科學出版社, 2008.
- 송철의 외 3인. 「譯註 增修無冤錄 諺解」.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윤중진. 법의학. 고려의학, 1993.
- 羅竹風 主編. 「漢語大辭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0.
- 장세경. 이두자료 읽기 사전. 한양대출판부, 2001.
- 鄭求福. 決訟類聚補 解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6.
- 김남일 외. 韓醫學通史. 대성의학사, 2006.
-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janggak.snu.ac.kr>). 「日省錄」.
- 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gate.dbmedia.co.kr>). 經國大典.
- 한국고전번역원(<http://www.itkc.or.kr>). 「欽欽新書」.
- 이영택. “近世朝鮮의 法醫學의 裁判과 無冤錄에 關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교실. 1956.
- 黃玉環. “中國古代法醫學發展史及相關文獻研究.” 碩士學位論文. 貴陽中醫學院. 2007.

- 안상우. “檢要-반드시 살펴야할 檢案의 요점.” 고의서산책 183. 민족의학신문, 제443호(2003.12.08).
- 안상우. “增修無冤錄-문예부흥과 법치문화.” 고의서산책 378. 민족의학신문 제 668호(2008.07.07).
- 한상권. “조선시대 법전 편찬의 흐름과 각종 법률서의 성격.” 역사와 현실 13권 (1994).
- 심재우. “조선후기 牧民書의 편찬과 守令의 刑政運營.” 『규장각 제21집(1998).
- 김 호. “규장각 소장 檢案(檢案) 의 기초적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1998).
- 賈靜濤. “中國法醫學史研究60.” 『中華醫史雜誌 第26卷 第 4期(1996.10).
- 閔曉君. “近代對《洗冤錄》的批判” 『唐都學刊 第21卷 第6期(2005.11).
-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janggak.snu.ac.kr>). “박계환 시신 검험 문안. 시장 屍帳 맥絡脈錄.” 司法稟報(甲) (17278-1-128-奎) 0076책.

